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 ◎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는 실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본인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연락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분납신청이 취소됩니다.
- ◎ 보호자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정정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보호자 정보 정정을 하여 아래 정보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한 후에 분납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 본인 인적사항

대학(원)	학부(과)	학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보호자(보증인)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기 본인은 분납제도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등록금을 분납하고자 보호자와 연서하여 신청합니다.

분납신청에 동의하였습니다.

분납제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위에 기재된 인적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에 기재된 연락처는 실제 연락이 가능합니다.

본 인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본 인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본 인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본 인 예 아니오
보호자 예 아니오

신청인 학 생 : (인/서명)
보호자 : (인/서명)

총 무 처 장 귀하

※ 유 의 사 항

- 분납 1차 등록을 필한 학생은 반드시 분납 2차, 3차 및 최종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분납 1차 등록을 마친 학생은 재학생으로 간주한다.
- 분납 최종등록 미필 시에 등록은 취소되며 분납 1차, 2차, 3차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 분납 최종등록 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칙 제31조 2호에 의하여 제적된다.
- 분납 최종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자퇴를 할 수 없다.
(즉, 분납 1차, 2차 또는 3차 등록을 마친 학생 중 휴학·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자퇴 이전에 등록금 잔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장학금수혜자(등록금의 25%이하 분납신청자)는 4차 고지서에 장학금감면 후 분납금액이 고지된다.
-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